

프랑스 ABS 법령(한국어): 생물다양성법 2016-1087호 (제5장 유전자원
취득 기회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발췌 번역)

2016년 8월 18일

2016년 8월 9일 프랑스공화국 공식 기관지(JORF) 제 0184호
서류 2호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레콘키스타(국토 회복 운동. 이슬람교도들이 이베리아 반
도를 점령했을 때, 그 국토를 탈환하고자 펼친 기독교도의 운동.)에 관한 2016년 8월 8일
제 2016-1087호 법률(1)¹⁾

NOR: DEVL1400720L

ELI:<https://www.legifrance.gouv.fr/eli/loi/2016/8/8/DEVL1400720L/jo/texte>
에일리어스: <https://www.legifrance.gouv.fr/eli/loi/2016/8/8/2016-1087/jo/texte>

- (중략) -

제 V 장: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

제 37 조

환경법전 제 IV 편 제 I 장 제 II 절을 이하와 같이 수정한다:

- 1 제목은 오른쪽과 같이 한다: <<자연유산 사용에 관한 상황>>;
- 2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활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제 1 관 (L412-1조를 포함한다)을 모두에 추가한다;
- 3 <<사육종 이외의 동물의 과학적 목적에 의한 이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1) 원문 타이틀 : LOI n°2016-1087 du 8 août 2016 pour la reconquête de la biodiversité,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있는 제2관(L412-2조를 포함한다)을 삽입한다;

4 다음의 제3관을 추가한다:

<<제3관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취득 및 그 이용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L제412-3조 - 본 관은 L제110-1조에서 정의된 국가의 공유재산 부분을 이루는 유전자원에 대해서 그 이용을 목적으로 취득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1992년 5월 22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그 이용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공유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를 정한다.

<<제1목2)

<<정의

<<L제412-4조 - 본 관에서는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1 유전자원의 이용: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유전의 단위를 가지는 다른 생명물질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인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활동. 특히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실천과 유전자원의 활용, 실용화 및 상품화에 의한 것;

<<2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 그 연구 및 활용;

<<3 이익 공유: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란 연구 및 가치화의 결과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하며, 이들 자원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곳인 국가 또는 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에 관계되는 주민사회와의 공유이다. 이익공유란 이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환경성주3: Sous-section를 '목(目)'으로 번역했다.

<<a) 지속적 이용을 보증하면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증가 또는 보전;

<<b) 사전 정보에 의거한 동의하에 관련된 주민사회의 전통적인 지식의 데이터베이스 작성(필요한 경우) 및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 기타 전통적인 관행 및 지식의 보전에 의해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보전하는 일;

<<c) 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유전자원 혹은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련된 지역의 공급 체인의 발전, 또는 생물다양성의 활용에 대하여 이들 자원의 안전에 공헌하는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공헌하는 것

<<d) 연구, 교육, 연수, 공중 및 지역 직업자의 계몽, 권한의 이전 또는 기술의 이전 활동에 관한 협동, 협력 또는 공헌;

<<e) 정해진 영토에서의 생태계의 공적인 기능의 유지, 보전, 관리, 공급 또는 복원;

<<f) 재정적 지원의 투입;

<<a에서 d에 언급되는 활동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 주민사회: 자연환경에서 전통적으로 생존 수단을 얻고 있으며, 그 생활 형태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관련된 모든 주민사회;

<<5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해당 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속성, 그 사용 또는 그 특성에 관련된 지식, 공부 및 습관으로, 기존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4에서 언급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에 의해 계속되는 것. 그리고 주민사회에 의한 지식 및 실천의 진화;

<<6 사육종 또는 재배종: 인간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진화 과정에 영향을 준 모든 종;

<<7 근연 야생종: 사육종과의 교배에 의해 번식하는 능력을 갖춘 모든 동물 종. 그리고 변종 선택에 있어서 재배종과의 배합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식물 종;

<<8 컬렉션: 수집된 유전자원의 시료 및 관련 정보의 정리이며, 공적 기관이 소유하던 민간 주체가 소유하던 상관없이 집적(集積) 및 보존된 것을 말한다.

<<제2목

<<국가의 영토에 있어서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취득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규칙

<<제1항³⁾

<<적용범위

<<L제412-5조 -

<<I. - 본 관은 이하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원의 획득;

<<2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

<<II 본 관은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I에서 언급되는 활동으로 하기에 관한 경우:

<<a) 인간의 유전자원;

<<b) 영토 외 및 프랑스 주권 또는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 외에서 채취된 유전자원;

<<c) 취득 및 이익 공유에 특화된 국제문서에 의해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

3) 환경성주4: paragraphe를 '항(項)'이라고 번역했다.

로, 1992년 5월 22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목적에 합치하고, 이를 훼손하지 않는 것;

<<d)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모델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환경, 농업, 연구, 건강 및 방위를 담당하는 성(省)에 의한 공동의 성령(省令)으로, 이들 모델종의 리스트가 제시된다;

<<e)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로 귀결될 수 없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f)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으로, 그 특성이 이를 공유하는 주민사회 밖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g) 농사·해양어업법전 L제640-2조에 정의되어 농림산물 또는 식품 및 해산물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활용 양식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및 기술;

<<2 주민사회 및 동 사회 사이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의 교환 및 사용.

<<3 국가의 방위 및 안전보장의 보호를 의도한 본 조 I 에 언급된 활동.

<<Ⅲ. - 본 목 제2항에서 제5항은 국가의 영토에 있어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취득과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특정한 규칙에 관계되는 본 Ⅲ의 1에서 5에 거론되는 유전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L제412-4조 6에 정의되는 사육종 또는 재배종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2 L제412-4조 7에 정의되는 근연 야생식물종의 유전자원;

<<3 산림법전 L제153-1-2조에 정의되는 식림에 관한 유전자원;

<<4 농사·해양어업법전 L제201-1조 1 및 2의 의미에서의 동물, 식물과 식품 위생의 안전에 관계되는 보전, 감시, 건강 피해에 대한 대책 범위 중에서 연구소에 의해 수집된 유전자원;

<<5 공중위생법전 L제1413-8조에 규정되는, 인체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의 예방 및 제어라는 명목으로 연구소에 의해 수집된 유전자원.

<<제2항

<<컬렉션

<<L제412-6조-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레콘키스타(국토 회복 운동. 이슬람교도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 했을 때, 그 국토를 탈환하고자 펼친 기독교도의 운동.)에 관계되는 2016년 8월 8일 제 2016-1087호 법률 공포보다 전에, 유전자원 또는 관계되는 전통적인 지식 수집이 실시되었을 경우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취득 및 이익공유 절차는 이하에 의해 적용된다:

<<1 L제412-7조 I 에 언급되는 목적을 위한 동 법률 공포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모든 취득;

<<2 다른 목적을 위한 모든 새로운 이용.

<<새로운 이용은 직접적인 상업개발 목적으로서의 모든 연구 및 개발 활동이라고 정의되며, 그 활동 분야는 해당 유전자원 또는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전의 해당 이용에 있어서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제3항

<<신고 절차

<<L제412-7조- I.-상업개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수집에 의한 보전 또는 활용에 관한 지식을 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원의 획득은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본 I 제1단락에 언급되는 유전자원의 취득이 L제412-4조에서 정의되는 주민사회가 존재하는 공공단체의 영토에서 이루어질 경우, 권한이 있는 행정당

국은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에 의해 조직된 주민사회의 정보전달 절차의 신고를 함께 해야만 한다.

<<Ⅱ. - 신청자는 동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가 존재하는 공공단체의 영토에서 채취된 유전자원에서 취득한, 산업 및 상업 기밀에 속하는 기밀정보를 제외하고 정보 및 지식을 공개해야 한다.

<<Ⅲ. - 공중위생법전 L제1413-8조에 규정되는 것 외에 인체,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에 관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전자원 취득은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Ⅳ. - 활동에 적용되는 이익 공유의 일반적인 방법이, 자신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신고자가 상정할 경우, 신고자는 그 활동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항

<<유전자원 취득을 위한 허가 절차

<<L제412-8조- I.- L제412-7조 I 및 Ⅲ에 언급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 취득은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익 공유에 관계되는 합의 후,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일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본 I 제1단락에 언급되는 유전자원 취득이 L제331-1조에서 정의되는 국립공원의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서식지 내에서의 채취를 포함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당국은 본 I의 적용하에서 수령된 유전자원 취득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를 위해 취득 대상인 국립공원의 공적 기관 이사회에 전송한다. 이사회는 토의를 개시한다. 이사회에 서류를 전송한지 2개월 이내에 근거 있는 의견을 권한이 있는 당국에 연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I 제1단락에 언급되는 유전자원 취득이 L제412-10조에서 정의되는 주민사회가 존재하는 공공단체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은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에 의해 조직된 주민사회의 정보전달 절차에 대한 허가가 함께 있어야 한다.

<<II. - 신청자와 관할 당국간의 합의에 있어서 규정되는 유전자원이 인정된 이용에 관한 조건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 조건에 대해서는 허가시 명시된다.

<<III. - 신청자는 동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가 존재하는 공공단체의 영토에서 채취된 유전자원에서 취득한 산업 및 산업기밀에 속하는 기밀정보를 제외하고 정보 및 지식을 공개해야 한다.

<<VI. - 하기의 경우 허가가 각하될 수 있다:

<<1 신청자와 권한이 있는 당국이 VII에서 규정되는 필요한 경우의 조정 실시 후 이익 공유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신청자의 제안에 의한 이익 공유이 분명히 그 기술적 및 재정상의 능력에 맞지 않은 경우;

<<3 이용을 위한 취득 신청이 행해지는 곳의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이를 고갈시키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활동 또는 적용.

<<각하는 근거가 제시된다.

<<V. - 이용자로부터 지불될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은 허가 대상인 유전자원 으로부터 얻어지는 것 또는 방법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매출(세금 별도) 및 기타 수입(형태를 불문)의 퍼센트로 계산된다.

<<이 퍼센트는 허가 대상인 유전자원수에 관계없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L제412-9조에서 규정된 국무원(國務院)의 정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어떠한 부담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VI. -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가 금전적 이익을 동반할 경우 이는 프랑스 생물다양성국에 충당된다. 동 국은 L제412-4조 3 a에서 d에 명기된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프랑스 생물다양성국은 국내의 생물다양성에서 중요해지는 해외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하여 금전적 이익이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재공유를 보증한다.

<<국가, 국립 레퍼런스 래버러토리(reference laboratory), 생물학 자원센터의 컬렉션, 또는 표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에 유래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어떤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 컬렉션이 이용자의 것이 아닌 경우, 프랑스 생물다양성국은 합의에 근거하여 유지관리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할당액을 해당 컬렉션 보유자에게 재분배한다.

<<VII. - L제412-19조에서 규정된 국무원의 정령은 신청자와 권한이 있는 당국이 이익 공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어느 쪽에서든 지 간에 제소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정 절차 방식을 결정한다.

<<제5항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이용에 대한 허가 절차

<<L제412-9조 - I.-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이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며, 그 허가는 L제412-10조에서 L제412-14조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이 절차는 해당 주민사회와의 사전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I. -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 후,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주민사회에 직접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에 충당된다. 이들 사업은 협의 및 주민사회의 참가하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L제412-10조 - 정령은 L제412-4조 4에 정의되는 주민사회가 존재하는 각 공공단체에 있어서 L제412 -11조에서 L제412-14조에 정의되는 조건에서의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보유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의 협의 개최를 담당하는, 공적 법인을 지정한다. 이 법인은 지방공공단체 일반 법전 L제4131-1조에서 규정되는 환경 협력 공적 기관, 동 법전 L제71-121-1조에서 언급되는 자문위원회, 아니면 국가 또는 환경 분야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일 수 있다.

<<동 법인은 또, 본 법률의 L제412-11조 6에 언급되는 조서를 참조하고, 이 용자와의 이익 공유 및 필요한 경우에는 귀속하는 자산 운용의 계약에 대하여 교섭, 서명할 책임을 진다.

<< L제412-11조 -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신청에서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허가 발급을 위해서 권한 있는 행정당국에 의해 파악된다)은 본 조 1에서 6에 열거되는 단계를 동반하는, 협의의 최장 기간을 신청자에 대하여 결정, 통지한다. 공적 법인은:

<<1 신청에 의해 관계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주민사회를 특정하고 그 보유하는 곳의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 및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적절한 습관적 또는 전통적 대표조직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2 해당 주민사회에 적합한 정보전달 및 참가 방식을 결정한다;

<<3 정보전달을 실시한다;

<<4 필요에 따라 신청 내용 또는 해당 주민사회에 관하여 적절한 공적 법인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구, 모든 기관, 모든 단체 또는 기금에 의한 협의를 실시한다.

<<5 모든 해당 주민사회의 참가를 담보하고 의견 일치를 도모한다:

<<6 협의의 전개 및 그 결과를 조서에 기록한다. 특히:

<<a) 지식 이용에 대한 사전 정보에 의거하는 동의, 또는 사전 동의 거부;

<<b) 지식 이용의 조건;

<<c) 이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합의의 공유 또는 결여 및 동 공유 조건;

<<7 해당 주민사회의 대표조직에 조서의 복사본을 전송한다.

<<L제412-12조 - I.- 행정당국은 조서를 참고하여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이용에 대하여 그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합의 또는 각하를 한다.

<<II.-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 이용은 허가에 명백하게 기재된 목적 및 조건 내에 한정된다.

<<L제412-13조- I.-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은 L제412-11조 6에 언급되는 조서를 참조하여 협의에 있어서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결과로서 이익 공유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와 교섭 및 서명한다.

<<이익 공유 계약 수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체결할 수 있다.

<<II.- 이익 공유 계약에서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취득 또는 이용에 관한 어떠한 독점 조항도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III. - 이익 공유형 계약은 제L412-19조에서 규정된 국무원의 정령에 의해 작성된다.

<<L제412-14조- I.-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익 공유 계약에서의 다른 수익자에게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이 이익은 이용자에 의해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에 부여되며, 동 법인은 하나 또는 복수의 관계 주민사회를 위한 이 이익의 관리 및 귀속(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보증한다. 이 이익은 별도 회계의 대상이 된다. 이는 하나 또는 복수의 관계 주민사회에 직접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에만 해당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협의 및 동 사회의 참가하에 행해질 수 있다.

<<II.-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은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용을 위한 계약에 정해진 기간, 본 조 I에 정하는 기준 및 이익 공유 계약 내용에 따르고 있음을 감시한다. 본 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III- 계약상 당초에 정해진 수익자가 소실되었을 경우, L제412-10조에 언급되는 공적 법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음을, 이익 공유 계약이 규정할 수 있다.

<<제6항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에 관한 해외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특별 조치

<<L제412-15조 - 구아도르프 및 레뉴온의 지역평의회, 기아나 및 마르티닉 의회, 마이요트의 현(縣)평의회는 이들이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취득 및 이용 신청에 대하여 L제412-7조, L제412-8조 및 L제412-9조의 I에 언급되는 행정당국의 기능 집행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제7항

<<컬렉션

<< L제412-16조- 정령은 과학적 컬렉션 소유자를 위한 간소화된 연간 신고 절차를 정한다.

<<8항

<<공통 조치

<<L제412-17조- I.- 신고자 또는 신청자는 권한이 있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신고 서류, 허가 신청 서류 및 당국과 체결된 이익 공유에 관계되는 합의(이들 유출은 산업 또는 상업상의 기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익명으로 해야 한다.)에 포함되는 정보에 관한 공통 조치를 나타낸다. 국가의 방위 및 안전보장의 보호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상술한 문서 및 합의에는 기

재되지 않는다.

<<II.- 허가 및 신고수령서는 행정당국에 의해 정보교환센터 내에 기록된다. 동 센터는 1992년 5월 22일에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약의 체결국 회의에 의해 창설된 것이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에 대한 유전자원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2항의 정의에 의거하여(동 의정서가 프랑스에서 발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국제적인 준수 증명서를 보유한 상태에 부수되는 소유권이, 이 기록에 의해 허가 및 신고 수령서에 부여된다.

<<III.- 이용자가 유전자원 또는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허가 또는 신고 수령증 및 (새로운 이용자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의무가, 이용자에 의한 양도에 동반되어야 한다. 새로운 이용자는 권한이 있는 행정 당국에 위양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용의 변경은 신규 허가 신청 또는 신규 신고가 필요하다.

<<IV.- 이익은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보전과 지역에서의 활용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충당된다.

<<제3목

<<유전자원 및 관계되는 전통적인 지식 이용에 관한 규칙

<<L제412-18조- I.-농사·해양어업법전 제VI편 제V장 제III절의 적용에 의한 동물 선별 작업(동물종 보전 작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합법적으로 상업화된 또는 상업화되어 있던 식물종의 이용 어디에도 본 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II.- 정령에 의해 하나 또는 복수의 권한이 있는 당국을 선출하고, 이러한 당국은 2014년 4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No511/2014(유전자원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근거한 이용자 준수 관련 조치에 관한 규칙), 특히 이러한 규칙의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까지의 적용과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U) No511/2014의 적용 형식을 상세히 기재하는 2015년 10월 13일의 위원회 실행 규칙(EU) No2015/1866(컬렉션 등록부, 이용자의 최우수 실례에 의한 규칙 준수의 감시에 관한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이하의 경우, 유전자원 및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자는 2014년 4월 16일의 규칙(EU) No511/2014 제4조에 정해진 정보를 본 II 제1단락에 언급되는 하나 또는 복수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제출한다:

<<1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사용을 포함하는 연구업무를 위해서 자금을 수급하는 경우.

<<공적 자금을 동의하는 행정 행위는 본 II가 정하는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유전자원 또는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연구업무로의 지원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의 반환 조항을 미리 규정해야 한다;

<<2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의 사용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의 최종 개발을 실행하는 경우.

<<이 이용이 특허 신청에 이르는 경우, 본 II 제1단락에 언급되는 정보가 신고자 주도하에 특허청에 제출된다. 특허청은 특허 신청에 관계되는 조사 및 신청일의 할당에 관한 통상 절차를 하고 유럽연합이 정한 규칙(유전자원 및 동 자원에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필요한 경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용자가 취득시 적용되는 모든 법적 또는 규칙상의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가맹국이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칙)의 적용을 담당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한다.

<<이 이용이 시장 투입 허가 신청에 이를 경우, 동 제1단락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시장 투입을 위한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해 수집되며, 이것은 본 II의 맨 뒤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는 권한이 있는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고 전달된다.

<<L제412-19조 - 본 관의 적용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 제73조에서 규정되는 지방공공단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원의 정령에 의해 정한다.

<<L제412-20조- I - 컬렉션 보유자는 유럽 컬렉션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 컬렉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레이블링을 신청할 수 있다.

<<II.- 2014년 4월 16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No511/2014 제5조 (유전자원으로의 접근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이용자 준수 관련 조치에 관한 규칙)에서 언급되는 유럽 컬렉션 등록부에 기재된 컬렉션에 유래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열거되는 정보 입수에 대하여 필요한 의무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레콘키스타에 관계되는 2016년 8월 8일 제 2016-1087호 법률의 공포보다 전이거나 컬렉션의 레이블링이 실시되는 날보다 전에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 필요한 의무는 이용자에 귀속된다.

제38조

동 법전 L제415-1조를 이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1단락 모두에 <<I. - >>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2 II에 이하의 <<II>>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II. - 본 조 I에 언급되는 직원과 더불어 이하 직원에는 L제412-7조부터 L제412-16조, 2014년 4월 16일의 유럽회의 및 이사회 규칙(EU) No511/2014 제4조(유전자원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근거한 이용자 준수 관련 조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진 의무 및 그 적용을 위한 문서에 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지적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1 경쟁, 소비 및 부정 방지 담당 직원. 이를 위해 소비 법전 제V편에서 정하는 직권이 부여된다.

<<2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명·승인한 직원;

<<3 이를 위해 연구 담당 장관이 지명·승인한 직원;

<<4 공중위생법전 L제1421-1조, L제1435-7조 및 L제5412-1조에 언급되는 직원;

<<5 지역의 국립공원의 승인된 직원;

<<6 지방공공단체 및 그 연합의 승인·위임된 직원;

<<7 이를 위해 농업 담당 대신이 승인·지명한 직원.>>

제39조

동 법전 L제415-3조 뒤에 이하 L제415-3-1조를 삽입한다:

<<L제415-3-1조- I.- 하기(下記)에 대해서는 1년의 징역 및 150,000유로의 징벌에 처한다.

<<1 L제412-3조 및 L제412-4조에 정의하는 유전자원 또는 관련된 전통적인 지식을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No511/2014 제4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서류를(의무화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2 동 제4조가 적용되는 곳의 유전자원 및 관련되는 전통적인 지식을 위한, 취득 및 이익공유에 관계되는 적절한 정보를 연구, 보관 또는 후속 이용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

<<본 I 의 1에 언급되는 유전자원 또는 전통적인 지식 이용에 대하여 이것이 상업 이용의 경우 벌금은 1,000,000유로에 달한다.

<<II.- 본 조 I 에서 정해진 위반을 범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보충적 벌칙으로 5년간을 넘지 않는 기간에 있어서 L제412-8조 및 L제412-9조 적용에 의해서 상업 목적에 있어서의 유전자원 또는 그 중에 몇몇 카테고리 및 관련된 전통

적인 지식 취득 허가에 대한 신청이 금지된다.>>

제40조

동 법전 L제173-2조Ⅱ에서 참조<<및 L제412-1조>>를, 참조<<, L제412-1조 및 L제412-7조에서 L제412-16조>>로 교체한다.

제41조

동 법전 L제132-1조 마지막 단락에서 << 및 삼림재산국가센터>>를 이하로 교체한다: <<삼림재산국가센터, 주민사회의 사전 정보에 의거한 동의를 받기 위한 L제412-10조 제1단락에서 규정된 국무원의 정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 및 전통적인 지식(최저 3년간 그 자격 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의 보전 활동을 하는, 정기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단체.>>

제42조

I.- 공중위생 법전 L제1413-8조를 이하와 같이 수정한다:

1 1에서 <<그 소유에 있어서의>>라는 표기를 <<그것이 보유하는>>으로 교체한다;

2 2의 첫 번째 문장에서 참조 <<L제224-2-1조 및 L제231-4조>>를 참조 <<L제202-1조에서 L제202-3조>>로 교체한다;

3 2의 뒤에 이하의 3을 삽입한다:

<<3 본 조 2에 언급되는 조건에서 미생물의 감리를 담당하는 연구소에 의해 수집된 생물자원은 공중위생을 위한 생물자원 컬렉션 중에 보관된다. 이들 자원 보관을 담당하는 기관의 리스트는 위생 담당 장관의 장관령에 의해 결정된다. 그 보관, 이용 제공,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조건은 국무원의 정령에 의해 결정된다.>>

II.- 동 법전 제3권 제 I 편 제 I 장 제 V 절에 이하의 L제3115-6조를 보충한다:

<<L제3115-6조 - 위생 담당 대신의 성령은 제3국의 또는 세계보건기관이 지정하는 참조 연구소로 자원을 이송할 목적으로 질환의 국제적 전염을 방지

하기 위해 유효한 생물자원의 신속한 취득에 관한 방법을 정한다.>>

제43조

I.-환경법전 제VI편을 이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 I 장 제IV절에 이하의 L제614-3조를 보충한다:

<<L제614-3조 - 제412-4조 및 5, 그리고 제412-9조의 II(마지막 문장을 제외한다)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적용된다.>>

2 제 II 장 제IV절에 이하의 L제624-5조를 추가한다;

<<L제624-5조 - 제412조 4 및 5, 그리고 제412-9조의 II(마지막 문장을 제외한다)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적용된다.>>;

3 L제635-2조 뒤에 이하의 L제635-2-1조를 삽입한다:

<< L제635-2-1조 - 제IV편 제 I 장 제2절 제3관, L제415-1조 II 및 L제415-3-1조는 그 권한 및 이하의 L제412-10조 제1단의 적용하에 윌리스 푸투나 제도에서 적용된다:

<<<<윌리스 푸투나 제도에 해외 영토의 자격을 부여하는 1961년 7월 29일의 법률 제 61-814호 제IV장에 규정되는 구역, 아니면 국가 또는 환경 분야의 권한이 있는 공적 기관이 L제412-11에서 L제412-14조에 정해져 있는 조건에서 주민사회의 협의를 개최할 책임을 진다.>>>>

4 제4장에 이하의 L제640-5조를 보충한다:

<<L제640-5조 - 제IV편 제 I 장 제II절 제3관, L제415-1조 II 및 L제415-3-1조는 프랑스령 남방·남극지역에서 적용된다>>

II. - 공중위생법전 L제3115-6조는 윌리스 푸투나 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 적용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및 뉴칼레도니아에서는 동 법전 제3권 제VIII편 제IV장 제V절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간, 국가와 뉴칼레도니아간에서 각각 정해진 조간하에 동 L제3115-6조가 적용된다.

제44조

환경법전 L제331-15-6조는 늦어도 동 법전 제IV편 제I장 제II절 3관에 규정되는 정령의 발효일 및 2018년 1월 1일까지(그 작성은 본 법률의 결과로 발생한다) 폐지된다.

제45조

I.- 헌법 제38조에 규정되는 조건에 근거하여 정부는 본 법률의 분야에 속하는 모든 조치를 하기의 목적을 위해 행정명령(ordonnance)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1 환경법전 L제412-5조 IV의 1, 2 및 4에 언급되는 유전자원 및 관련되는 전통적인 지식의 취득 방법과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 공유 방법을 정할 것.

2 본 I의 행정명령에서 제정된 의무에 대한 위반 및 침해를 벌하기 위한 행정 및 형사처벌 제도를 정할 것.

II.- I에 규정하는 행정명령은 본 법령의 공포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정된다. 각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그 공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법안이 의회에 회부된다.

제46조

2011년 9월 20일에 프랑스가 조인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에 대한 유전자원 및 그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면서도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 정서의 승인을 허가한다.

--(중략)--